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월 9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예산 또는 기금의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입안 시,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을 의원 발의 의안까지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함(안 제8조제1항)
- 의원 발의 의안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위원회 심사 시로 규정함
(안 제11조제2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1월 1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2
 - 전자메일 : lksj1@korea.kr

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따라 오산시장이 발의하는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오산시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8조에 따라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(이하 “소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작성하되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에 <u>따라 오산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8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① 「<u>지방자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8조에 <u>따라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비용추계서 협의) <u>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오산시조례·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기 전에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① <u>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오산시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8조에 따라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작성부서) ① <u>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(이하 “소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작성하되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·연구를</u></p>

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
<신 설>

제11조(비용추계서 제출) (생략)

<신 설>

의뢰할 수 있다.

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1조(비용추계서 제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.